

김선화 / 5월 / 실전 GS / 4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41984	18	12	12	11	53	1	4.35%	23
542706	15.5	12.5	14.5	9.5	52	2	8.70%	
541787	14.5	13.5	12	11	51	3	13.04%	
542033	17	10	13	10	50	4	17.39%	
541738	15	11	12.5	11	49.5	5	21.74%	
542812	19	10	11.5	9	49.5	5	21.74%	
541899	18.5	10.5	12.5	7	48.5	7	30.43%	
542615	16.5	9.5	11.5	10.5	48	8	34.78%	
542521	17	10.5	10.5	9	47	9	39.13%	
541733	13	11.5	11.5	10.5	46.5	10	43.48%	
535192	13	11	13	8	45	11	47.83%	
541776	15.5	9.5	12.5	7	44.5	12	52.17%	
541764	13	12	11.5	7.5	44	13	56.52%	
541783	12	9.5	11.5	9	42	14	60.87%	
542424	13	11	10.5	7	41.5	15	65.22%	
542660	14	10.5	12.5	2.5	39.5	16	69.57%	
543093	14	0	13	7	34	17	73.91%	
535218	17.5	10	5.5	0	33	18	78.26%	
541740	12.5	12	2.5	6	33	18	78.26%	
542140	13.5	10	8	1.5	33	18	78.26%	
542650	10.5	9.5	7.5	5	32.5	21	91.30%	
542824	15	12	5.5	0	32.5	21	91.30%	
542690	11	7.5	9.5	2	30	23	100.00%	

<p style="text-align: center;"><b>김선화/5월/실전GS/4회/1번</b></p>	<p><b>채점자</b></p>
	<p><b>이민호</b></p>
<p><b>1. 설문 1</b></p> <p>설문 1은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판단을 하는 문제였습니다.</p> <p>여기서 주 논점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30조)’ 와 ‘학교교육 목적으로 이용(제25조 3항)’ 으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조문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의 답과 관련된 제25조 3항만 쓰시고 제30조 기재를 빠뜨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p> <p>물론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빠져도 문제는 없는 논점이었으나, 문제에서 굳이 “교무실 복사기로 인쇄” 하였다고 언급한 것이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제30조 단서를 겨냥한 트리거이므로, 이를 캐치하셨다면 무척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p> <p><b>2. 설문 2</b></p> <p>설문 2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에 따라서 빠짐없이 적절히 답해주시면 점수 드렸습니다.</p> <p><b>3. 설문 3</b></p> <p>설문 3에서는 ‘야간대학원’ 이라는 워딩 때문에 학교교육 목적으로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라고 결론 내신 분들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에 해당하여 이용이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셨어야 합니다.</p>	

<b>김선화/5월/실전GS/4회/2번</b>	<b>채점자</b>
	<b>조은석</b>

**< 채점기준 >**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2	1	법 제13조 제1항(동일성유지권 의의) 언급	1	4	
		법 제13조 제2항 제5호(동일성유지권 제한) 언급	1		
		사안 포섭	1		
		설문(1) 해결 - 동일성유지권 비침해	1		
	2	2	법 제21조(대여권 의의) 언급	1	6
			설문(2) 해결① - 乙의 행위가 '대여권' 침해인지 (소극)	1	
			법 제35조의5 제1항(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언급	1	
			법 제35조의5 제2항(판단방법) 언급	1	
			법 제35조의5 사안 포섭	1	
			설문(2) 해결② - 乙의 행위가 제35조의5에 해당하는지 (적극)	1	
	3	3	법 제2조 제1호(저작물 의의) 언급	0.5	4
			저작물 판단기준 판례 언급 (키워드 : 단순히 남의 것 모방X,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0.5	
			제호의 경우 판단 판례 언급 (키워드 :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는 어문저작물X)	1	
			사안 포섭	1	
			설문(3)의 해결 - 이 사건 도서 제호는 저작물 인정X, 저작인격권 침해X	1	

**1. 설문 1**

설문 1은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조문(법 제13조 제1항, 제2항)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법조문을 병기할 때, 항상 항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설문 2**

설문 2 또한 법 제21조와 법 제35조의5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법 제35조의5 제2항과 관련하여 사안 포섭 채점을 할 때, 문제에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진 '표지 1장, 속지 40장 중 1장' 을 포섭하셨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들 잘 하시지만 사안 포섭하실 때 단순 결론만 내기보다는, 문제 속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전개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 설문 3**

설문 3의 출제 의도는 '제호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인격권 침해성립 불가' 였으나, 설문이 다소 모호해 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甲은 제호의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고 논리전개를 해도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4회차 GS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저작권법 실전GS를 듣는 모든 분들의 저작권법 PASS와 합격을 기원합니다.

<b>김선화/5월/실전GS/4회/3,4번</b>	<b>채점자</b>
	<b>유화정</b>

### 1. 3문 채점평

설문 2에서 ‘음반’ 과 ‘상업용음반’ 을 각각 정의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사건 파일이 ‘음반’ 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상업용 음반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함을 그 제작(복제)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 결론적으로는 ‘상업용음반’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주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업용음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설문 3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암호화 조치의 가목과 나목 검토 시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2. 4문 채점평

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저작자의 권리 제한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한에 대해, 제93조 2항 단서에서 말하는 “상당한 부분으로의 간주” 에 대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판단하여,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3. 총평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지났으니, 시험일까지 조금만 더 힘 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실전 8회가 끝날 때쯤에는 모든 수강생 분들이 시간 내에 4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문제 1]

19

J. 특허 III

1. 권리 행

① 적절한 지식인이 행해야 하거나 ② 지식행방의 이용행위가  
행해야 하며 ③ 의의성. 실질적 지식 만족하여야 함. ④  
라한, 지식재산권 제한 제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행  
제가 다다.

2. 특허 권리 양도

(1) 특허 권리양도 계약 - 서식

특수 지식재산이 인정된 2의 관원인 권제로 복  
사기로 인정할 때, 인의성. 영구적으로 행하기 인정할  
기이 특허 행위가 허용한다. (법 제 23조 2호)

(2) 비특수 권리양도 계약 - 서식

특수 2의 관원인 권제로 복사가기로 인정할 것은 복  
정들에게 나눠줄 때, 영구적이거나 때때로 받기 나와  
2 양도 들 행한다, 특허 비특수행위 허용한다. (법 제  
23조 23호)

3. 의의성 및 실질적 지식 만족 여부 - 서식

(1) 의의성 만족 여부 - 서식

사회에 따르면, 특허 제가 무용 한 때, 2의 이상  
있을 때 '정한 가능성'이 인정되나, 2의 이상은 실



제는 이러한 바, '신상사' 유사성도 인정되는 바, 그에  
상 만족한다.

A) 신상사 유사성 만족 여부 - 족족

① 2의 이 사건 1호 관해 이러한 바, 신상사  
유사성 만족한다.

4. 시각 유사한 제반 여부 - 족족

(1) 특이요인 부재 등이 있음 (합계 25점 3점)

① 신상특이 등기번호 부합 요인으로 인정되는 권역은 공  
표된 제각종 원부번호 부재. 비로 한 수 있다. ② 다  
반, 공표된 제각종 신상 등기 번호 하등 제각종  
의 권역은 부재. 비로 하는 것이 부응이 한 바, 권역  
제. 비로 한 수 있다.

(2) 부응이한 제각종 여부 - 족족

① 2의 이 사건 1호로 인정된 제각종 제각종 제각종  
이 인정되는 제각종 바, ② 2의 제각종 신상기 바  
의 ①은 제각종 제각종 2 제각종 권역은 부재. 비로  
수 바, ②는 부응이한 제각종 제각종.

(3) 도호

시각 유사한 제반 제각종 합계 25점 3점 단서까지  
충족한다.

5. 결론 신 부호권(합계 16점), 비호권(합계 20점)

①의 부재. 비로 인정된 2 제각종 제각종 제각종 제각종

가장 중요  
내용 잘 정리  
영문 good

는다.

I 실용성

1. 실용성 유지한 침해 여부 - 5주

(1) OR (법 제 13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또는 실용성 일체 저작권  
권리를 갖는다.

(2) 선택 - 이용한 경우 (사실)

사실은 저작물의 <sup>그 부분</sup> 일부를 <sup>그 부분</sup> 이용한 경우, 그 부분이 작  
품 전체에 대한 이익이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실용성 유지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다.

(3) 실용성 유지한 제한 (법 제 13조 2항 1호)

제 25조 제1항 제2호 저작물 이용자는 그가 학업 또는 직업에  
필요한 학제적 인성적 양치기 또는 방법으로 실용성 유지한 침해  
가 아니다.

(4) 사안

① 제 25조 제1항 제2호 저작물 중 일부는 그대로 이용하였고, 이것이 작  
품 전체에 대한 이익이 없으며 ② 학업 또는 직업 목적으로 복제하여  
변형한 것일 때는 ③ 실용성 유지한 침해가 아니다.

2.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5주

(1) 제 25조 제1항 제2호

제 25조 제1항 제2호 저작물 일부를 학생들 관리 용이한 바, 법 제 25조



3항의 양면 청구가 허용된다.

(2) 제1항 (법 제 25조 3항)

특정 사항 기하여 등록된 저작권 중 일부만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시한 된다.

(3) 또한

법 제 25조 3항 정정하기 저작권 침해이다.

### II. 실용성

1. 저작권 인정된 창작 역부 - 1항

(1) 등록된 (법 제 11조) 창작 역부 - 1항

2의 저작권이 이미 등록된 바 최초 등록 (제 11조) 이면  
라, 등록된 창작 역부 인정된다.

(2) 실용성 인정된 <sup>(법 제 12조)</sup> 창작 역부 - 1항

2은 2의 이상한 2항 중 2항 인정된다, APA 등  
2항 2은 2의 이상한 2항, 실용성 인정된 창작  
역부 인정된다.

(3) 실용성 인정된 (법 제 13조) 창작 역부 - 1항

제 13조가 인정된, 2은 2의 이상한 저작권 중 일부  
는 그대로 인정된다, 2의 이상한 소관 인정된 바  
2은 인정된 20개년 관습으로 인정된 바, 2은 인  
정된 일부가 2 저작권 관습으로 인정된 중 인정된 사항  
도 있다. 따라서, 실용성 인정된 창작 역부이다

A) 고지

위작 인정한 권제까지 않는다.

2. 위작 재산권 침해 여부 - 소

(1) 제1 행위 - 복제

제2 제1 위작자인 이상에 소인 중 안팎은 논쟁이 인정할 바, 인식적, 영행으로 위법성이 고쳐질다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행위는 복제 행위이다.

A) 등록된 위작물의 인용인시 여부 - 주

1) 의의 (법 제 28조)

등록된 위작물도 성취 중인 위작물은 정당한 범위 내 이의 인정할 수 있는 행위에 이르는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정할 행위에 따른 이의 정당한 범위(주)에 속하는 위작물 위작물인 이상 위작물 안에서의 부당한 행위는 갖는 행위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이나 소의 권리, 인용 목적, 실용, 학술, 보도, 인용 방법, 기타 행위에 관한 것인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른 이의의 정당한 범위 내 인정한다.

3) 소

이제는 제1 제2 소인 중에서 2개 정당한 위작물 인정할 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인 2인 1인 소인 위한 인용인 소, 2개 정당한 인용된 바, 권제권은 비중에서 적지 않은 차지권 소, 이러한 제1 소인 2

0.5

1

2

1



이 이 사건 같은 대외발수 권리 상충 문제라면 ③법  
제 28조 적용 가능하다.

③) 고지

합계 28조가 성립되는 바, 2회 복제권 (합계 62) 침해되  
지 않는다. (본)



문제 2 [3.5 Very good!

I

설문(1) X

1. 동일성 유지권 위 (法 13조 1항) -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 (法 13조 2항 5호) - 1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 저작자는 이의할 수 없다.

3.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판례

표의가 사권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셋데이일 이치로 이용한 사건에서, '이는 이 사건 이치로 단순 특수한 것에 불과하여 본질적인 내용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法 13조 2항 5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4. 결론

2019년 사건 표지를 셋데이일 이치로 한 것은 단순특수하게 불과하고,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II. 설문(2) X



1. 대역권 침해 여부 (53조)

(1). 대역권 위위 (20조 외조) — |

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생물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역권 권리를 가진다.

(2). 대역권의 대상 (20조)

대역권의 대상은 생물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뿐, 도서는 대역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사안

대역권의 대상에는 도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20조 이 사건 도서의 표지 및 뒷 표지를 웹사이트에 올린 것은 대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공정한 이용 여부 (20조 외조)

(1).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0조 외조 5 제 1항) — |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행위와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고려요소 (20조 외조 5 제 2항) — |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동조 제 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사건 또는 가치나 광범위한 사건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5) 시간~~

~~이 이 사건 도의 표의 및 속의 일부를 해설로 갖춘 상태로~~

13. 시간

① 이 이 사건 속의 40항 중 1항은 해설로 갖춘 게시한 점, 이러한 속의 1항은 이 사건 도에 대한 가치는 취할 열려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의 속의 관해는 또 3항의 도에 해당한다.

② 다만, 이 사건 도는 오히려 관상인 점, 아무리 해설로 갖춘 여전히 이 사건 도를 인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에 대해서는 또 3항의 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III 실문(3) 3.5

1. 저작물의 (法 2조 1호) - 0.5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2. 제도가 저작물인지 여부 (소극)

(1) 判例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의 제호나 청구서의 생리는 항락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

2. 자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甲의 이 사건 도서의 제호는 단지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항락성이 없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도서의 제목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2이 제목을 변형했어도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끝)

[문제-3]

145

I. 서문(1)

1. 공연과 공중의의

(1) 공연의의 (2조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음반 방송을 상연·재생 그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권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 공중의의 (2조32호)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연의 범위 (제1)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이 반드시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을 필요 없으며, 시간이 다르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저작물이 공중에 공개된다면 공연으로 보는 입장이다.

3. ~~제1~~ 2주장의 타당성 정도.

2의 매장에 스피커를 사러 온 고객들은 불특정 다수인 이므로 공중에 해당하며, 이들은 2의 매장에 출입 하였으며, 2과 같이 이 사건 사실이 배경음악으로 재생되었으므로 공연에 해당하기에 2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Ⅱ	설문(2).
1.	29조 2항 의의 및 취지.
(1)	29조 2항 의의
	<p>공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b>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b>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p>
(2)	29조 2항 취지.
	<p>상업용 음반과 <b>상업적 목적으로</b> 공표된 영상저작물은 공중에게 공연되는 사실만으로도 홍보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9조 2항에 따라 공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p>
2.	<del>상업용 음반</del> 상업용 음반의 의의 및 범위
(1)	음반의 의의. (2조 5호)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음을 디지털화 한 것은 포함한다) 을 말한다.
(2)	상업용 음반의 의의 (2조 7)
	상업용 음반이란 <b>상업적 목적으로</b> 공표된 음반을 말한다.
(3)	상업용 음반의 범위 (취지)
	판계는 29조 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b>상업용 음반</b> 이란, <b>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b> 제작되었으며, <b>상업적 목적으로</b>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음반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3. 무극량 1 및 2의 타당성 검토

## (1) 무극량1 타당성 검토.

① 무은 이 사건 파일은 저작권방상 음반이 아니라고 극량하고 있는데, ② 음반의 범주에는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므로 ③ 디지털 형태의 음원들의 순서를 배열한 이 사건 파일 음반에 해당한다. ④ 그러므로 무극량1은 타당하지 않는다.

## (2) 무극량2 타당성 검토.

① 이 사건 파일은 2 매장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한 파일에 해당하며, ② 판매의 태도에 따라 이 사건 파일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29조2항에서의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그러므로 ~~무극량2~~ 29조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④ 매각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는 무 이 사건 음원에 대한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만 이용허락을 받았을뿐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A와 계약한 2도 이 사건 음원에 대한 공연권이 없으며, ⑤ 2의 웹캐스팅 방식의 이용행위는 공연(29조3항)에 해당하며, 그대로 재생했으므로 의제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무의 음원에 대한 공연권(217) 침해이다. ⑥ 그러므로 무극량2는 타당하다.

II	서문 (3)
1.	기술적 보호조치 의의 및 종류
(1)	<del>기술적 보호조치</del> 접근 통제 (28호 출가목)
	저작권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	이용 통제 (28호 나목)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구분 기준 (71)
	판례는 저작권은 개별 리본권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기술적 보호조치도 각 권리마다 접근 통제, 이용 통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3.	공연권, 배포권 조치 구분
(1)	공연권(9.17)의 경우.
	① A는 2매장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였는데, ② 암호화 조치로 인하여, 2매장에서만 재생될 수 없으므로 다른 곳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기에 이용 통제(28호 나목)에 해당한다.
(2)	배포권(9.20)의 경우.
	① 이 사건 파일은 2매장에서만 재생될 수 있는 암호화

조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② 공중이 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에게 양도 ~~할~~ 될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배포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근 통제 예 (2호2호) 가 폭에 해당한다.



### [문제 4]

#### 1. 심문 1)

##### 1. '이 사건 판결'의 유형 검토

###### 1) 데이터베이스 유형 (지정제23 제19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평판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여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2) 사안의 경우

이 사건 판결은 특허번호 A 및 B를 포함하여  
2만여 개의 특허번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응한다.

#### 2. 甲의 취지 검토

###### 1) 데이터베이스 저작자 (지정제23 제20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자란 그 소재의 집합, 정렬 또는  
보충에 노력 또는 투자로 상당한 재력을 한 자를 말한다.

###### 2) 사안의 경우

甲은 국립 그 주연과 컴퓨터 여러번의 비행을  
통해 압제명, 주소 등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사-보충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의  
취지를 가진다.

## 표 식별(2)

### 1. 논리강리

데이터베이스 쿼리 캐싱 여부 강제로 키레 무의 캐시 메스가 보류대상이거나, 그 쿼리가 무엇인가, 그의 어휘 캐싱에 캐싱되는지 여부를 강요한다.

### 2. 보류하는 데이터베이스 인의 여부

#### (A) 데이터로

데이터로 강요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캐싱해야 보류 대상이 된다.

#### (B) 수반의 경우

캐싱을 강요 대상 또는 논리강리에 의한 요구처의 어휘의 작성해야 하는 바, 무의 쿼리의 속박을 강요로 제공되는 사례는 보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데이터베이스 캐싱의 종류

#### (1) 데이터로 캐싱

데이터베이스 캐싱은 캐시 데이터베이스의 캐시 또는 상향된 부분을 복제, 배포, 전송 또는 권한을 가지게 한다.

#### (2) 데이터로 캐싱

데이터베이스 캐싱은 상향된 부분으로 전송되지 않는 캐싱 또는 그 상향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와 캐싱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캐싱으로 전송되는 이점의 어휘를 전송하거나

데이터 베이스 기각기에 영속 부분에게 채택한 경우  
에는 해당 데이터 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본다.

4. 상당한 부분의 복제의 의미 (위례)

위례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는 원경·양적 복제를  
취미하는 것으로 양적으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복제되는 부분의 비율 등을 고려하고 양적으로는  
그 복제되는 부분에 데이터 베이스 기각기에 영속 또는  
복제로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한다.

5. C의 권리침해 여부 검토

(1) 양적으로 상당 부분인지 (63)

그만까지의 숙박업 정보 중 70여개의 정보를  
크로킹으로 취득한 것이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권리는 상당 부분인지 (63)

甲이 주로 문과·인문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수집한 정보는 숙박업에 B에 대한 정보들이므로  
숙박업에 A의 일부 정보를 수집한 것이 그 데이터  
베이스의 권리로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문제 9 //
2. 실문(1)	
1. 이 사건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인지 여부 (적극)	
(1) 데이터베이스 위함 (특 2조 1호)	



데이터베이스는 소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으로 그 소리에 접근하거나 그 소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 사안

이 사건 과일은 수록업체 A 및 B를 포함하여 2만 여 개의 수록업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일로써, 데이터베이스이다

2. 甲의 지위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지위 (法 2조 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리의 갱신 등에 있어 인식,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 사안

무엇 이 사건 과일을 위해 직접 수인과 협력하여 비용을 하고, 대외적 사인, 장소, 업체명 등 정보 수첩에 있어 상당한 노력, 인식 투자를 한 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다.

II. 실문(2)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法 13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 등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요건 (판례)

데이터베이스 제작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등을  
해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제한 (조 93조 2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조 93조 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도 반복적이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행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통용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4. '상당한 부분' 판단방법 (判例)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인지는 양적·질적의 성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은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와  
대비, 판단해야 하고,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정당한  
이익을 하기 위해 인식·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 사안

(1) 양적 고려

위의 이 사건 파일에는 수록된 4 및 5를 포함하여



총 2만여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2이  
수집한 숙박업소의 정보는 단지 70여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아니다.

(2) 실적의 정도 고려

이 사건 파일에서, 甲이 특히 숙박업체 B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킹·협력을 하는 등 상당한 인식,  
문서의 두라를 하였으나, 반면, 2이 수집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양에 A에 관한 것으로서, 질적으로도 상당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2이 행위는 甲의 이 사건 파일 중  
전부 및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2은 甲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제 여백]

부적합  
비밀  
경쟁이  
경쟁  
경쟁상사!  
경쟁상사!  
경쟁상사!

답지 - 43 11

I. 실문 (1)

~~데이터 베이스~~

1. "이 사건 판결" 성격 - "데이터 베이스"

(1) 데이터 베이스 예외 (2조 19호)

데이터 베이스는 소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정렬한 편집물로서 개별적 소리 집합-검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사안

"이 사건 판결"은 개별 소재인 수록물에 A, B등에 집합-검색이 가능한 편집물이므로 "데이터 베이스"이다

2. 특허 권리 -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1)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예외 (2조 20호)

데이터 베이스의 제작 또는 수록물의 갱신등에 "인적 또는 물적 상당한 투자" 한자를 말한다.

(2) 상당한 투자 판단 기준 (최대법원)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는 ① "양적 측면"에서 수록물의 분량등을 고려 알뿐만 아니라, ② "질적 측면"에서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있었는지를 고려 해야 한다.

(3) 사안

- ① ~~한~~ 수백명씩 A, B등을 두방하여 "양쪽인 측면"에서  
 2인자에게 달아는 정보를 해설 청양이며
- ② 수백명씩 B의 경우 "클라우드" ~~이~~ 여타인 이들을  
 통해 안장 ~~한~~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 ③ "이 사건 파일"에 ~~한~~적, 불적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이 해당 한다.

### 3. 결론

"이 사건 파일" 관련 ~~한~~은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이다.

## II. 선행 (2)

### 1.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한~~의 권리 (93조)

#### (1) 권리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 "제작한 상당한 투자"를  
 복제등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제한

~~한~~은 "이 사건 파일"을 "제작한 상당한 투자"를 복제등  
 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 ~~한~~은 데이터 베이스 "제작" 사용에야 ~~한~~에관한 ~~한~~의-소극

(1) ~~원칙~~

데이터베이스 제각각 권리를 대신 "권력" 이용에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권력~~" "상당부분"이라고  
침해가 성립한다.

## (2) 사안

2이 ~~원~~의 "이사권 파일" "권력" 사용하지 않은 상당부분으로  
침해가 성립 안하는 것은 아니다.

## 3. 2이 "상당부분" 침해받는지 여부 - 소극

## (1) 개별사례의 이용 (93조 2항)

~~파일~~ > ~~원칙~~

## D) 원칙

"개별사례"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 2) 예외

대반, 개별사례 또는 상당부분에 권리 못하는 것은  
"번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인" 하여  
데이터베이스 제각각 이익과 충돌 하는 경우 "상당부분 복제등"  
으로 본다.

## (2) 개별사례가 상당부분 이용의 간주되는 경우 (원칙)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 "개별사례" 이용되라도  
"번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인 이용하여"

~~작성~~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가 "안정적으로 성능향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이 기술을 향상하게 해주는 경우  
상당 부분 양으로 권극된다.

(3) 사안

① 2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파일"의  
"개발소스"인 100여개 속박양소 정보를 수집 하였으나,  
② 이는 ~~이~~ 상당한 인적·물적 및 상당한 투자를  
한 "속박양체 B가 아니라" 속박양체 A에 관한  
정보이므로,

③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이 정보를 향상하게  
해라리 아니 하므로"

ⓐ 상당한 부분의 양으로 권극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2은 "이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

- 이 하 여 백 -